

11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정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정관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조 (설립)	1
제 2조 (명칭)	1
제 3조 (목적)	1
제 4조 (사무소)	1
제 5조 (공고의 방법)	1
제 6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

제 2 장 이 사 회

제 7조 (이사회 설치와 기능)	2
제 8조 (구성)	3
제 9조 (회의)	3
제10조 (이사회 의 소집)	3
제11조 (의결방법)	3
제12조 (감사의 의견진술)	3
제13조 (의사록)	3
제14조 (간사 등)	3
제15조 (선임비상임이사)	4
제16조 (감사 및 자료요청 등)	4

제 3 장 임 원

제17조 (임원 및 임원의 임면)	4
제18조 (임원의 임기)	5
제19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제20조 (이사장과의 계약 등)	6
제21조 (임원의 직무)	6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7
제23조 (직무대행)	7
제24조 (임원 및 직원의 보수)	7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	7
제26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8
제27조 (임원의 해임 및 해임요청)	8
제27조의2 (의원면직의 제한)	9

제 4 장 조직과 임무

제28조 (소속기구)	9
제29조 (조직)	9
제30조 (인사위원회)	9
제31조 (위원회)	10

제 5 장 직원 및 겸직교원

제32조 (직원의 임면)	10
제33조 (직원의 신분보장)	10
제34조 (겸직교원의 임명)	10
제35조 (겸직교원의 보직 등)	10
제36조 (겸직교원의 보수 등)	10

제37조 (겸직해제 등)	11
---------------------	----

제 6 장 파견공무원

제38조 (파견공무원의 요청)	11
제39조 (파견공무원의 직무)	11
제40조 (파견공무원의 보수)	11

제 7 장 사 업

제41조 (사업의 범위)	11
제42조 (예산의 편성)	13
제43조 (예산운영계획의 수립)	13
제44조 (경영목표의 수립)	14
제45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14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46조 (기본재산)	14
제47조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14
제4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15
제49조 (사업연도 및 회계)	15
제50조 (운영재원)	15
제51조 (보상금의 요구)	15
제52조 (보상금의 교부신청)	16
제53조 (보상금의 관리)	16
제54조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16
제55조 (결산서의 제출)	17
제56조 (잉여금의 처리)	17

제57조 (업무의 위탁 등)	17
-----------------------	----

제 9 장 보 칙

제58조 (경영공시 및 고객현장)	19
제59조 (정관변경)	20
제60조 (해산)	20
제61조 (대리인의 선임)	20
제62조 (시행규정)	20
제6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
부 칙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정관

제정	1981.11. 2	변경	1999. 3.12	일부변경	2011. 1. 3	일부변경	2019.12.31
변경	1984.12. 8	변경	2001. 2. 6	일부변경	2012. 3. 7	일부변경	2021.12.27
변경	1990. 1. 3	변경	2001.12. 7	일부변경	2012. 6.14	일부변경	2023. 7.10
변경	1990. 9. 6	변경	2002. 5.29	일부변경	2012.11.27	일부변경	2026. 2. 11.
변경	1991. 4.19	변경	2005. 6. 1	일부변경	2012.12.26		
변경	1992. 4. 2	변경	2006. 7. 4	일부변경	2013. 7. 5		
변경	1993.10.23	변경	2006. 9.13	일부변경	2014. 1. 9		
변경	1994. 7. 1	변경	2006.11.29	일부변경	2015. 7. 8		
변경	1997. 8. 6	전부변경	2007. 7. 1	일부변경	2017. 9.28		
변경	1998.12.10	일부변경	2010. 3.31	일부변경	2018. 6. 5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 이 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약칭 “보훈공단”이라 하며,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약칭 “VETERANS HEALTH SERVICE” 또는 “VHS”)로 표기한다.

<변경 11.1.3>

제3조(목적)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며, 무의탁자, 노령자 등의 주거, 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보훈병원, 요양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14.1.9>

제5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보급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주된 사무소 등에 게시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공단의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근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변경 11.1.3>

제 2 장 이 사 회

제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변경 12.3.7>
8.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예비비 사용과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11.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외부임원 선임 및 이사장 경영목표 및 성과급 등 계약안 작성에 관한 사항 <변경 18.6.5>
13. 제27조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해임 건의·요청 <변경 11.1.3>
14. 제1호 내지 제13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회계감사, 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이사회는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 ① 이사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2월, 10월, 12월에 개최한다. <변경 17.9.28>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0조(이사회 소집)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7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이사가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변경 11.1.3, 12.6.14>

③ 제2항에 의하여 대리로 참석하는 사람은 이사회 소집시에 미리 통지한 의안에 한하여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변경 11.1.3>

④ 의안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변경 11.1.3>

⑥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등) 이사회는 이사회 서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서기 약간인을 두되, 공단의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15조(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감사 및 자료요청 등) ①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자료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 이사에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7조(임원 및 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10.3.31, 23.7.10>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공단 규정에 따른다. <변경 10.3.31, 18.6.5>

④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비상임이사는 그 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 <변경 10.3.31., 11.1.3, 23.7.10>

1.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및 보훈의료복지국장 <변경 17.9.28, 23.7.10, 2026. 2. 11.>

2. 기획예산처의 사회예산심의관 <변경 2026. 2. 11.>

3.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10.3.31, 2026. 2. 11.>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변경 11.1.3>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법”이라 한다)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변경 18.6.5>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원추천후보자를 추천하고, 제17조에 따른 이사장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사항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과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국가보훈부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변경 11.1.3>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변경 11.1.3, 23.7.10>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대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23.7.10.>

④ 이사장과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23.7.10.>

⑤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변경 23.7.10.>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③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단의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와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감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사결과 부정·불비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사회를 소집 요구하여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3.7.10.>
 5.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6.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변경 10.3.31, 2026. 2. 11.>
- ⑤ 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3조(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임원의 보수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이 사 장 : 공단의 경영성과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수준 <변경 11.1.3>
2. 상임이사 : 제2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변경 11.1.3>
3. 감 사 : 공공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7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이사에게는 공단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11.1.3>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변경 11.1.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 11.1.3>
2.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11.1.3>
 - 가. 공공법 제22조(해임요청 등)에 따라 해임된 임원 <변경 11.1.3>
 - 나. 공공법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에 따라 해임된 임원 <변경 11.1.3>
 - 다. 공공법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에 따라 해임된 임원 <변경 11.1.3>
 - 라. 공공법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해임된 임원 <변경 11.1.3>
 - 마. 공공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해임된 임원 <변경 11.1.3>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변경 11.1.3>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변경 11.1.3>

제26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는 공단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변경 11.1.3>

③ <삭제 10.3.31>

제27조(임원의 해임 및 해임요청)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변경 23.7.10.>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사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의무와 책임 및 제21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 10.3.31, 11.1.3, 23.7.1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단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변경 10.3.31, 11.1.3, 2026. 2. 11.>

④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변경 10.3.3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가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의무와 책임 및 제21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할 수 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 10.3.31, 11.1.3, 2026. 2. 11.>

제27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 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 인 때

[본조 신설 2013.7.5.]

제 4 장 조직과 임무

제28조(소속기구) ① 공단의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하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가료대상자의 거주 분포 등을 감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보훈병원 건립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고, 보훈대상자 및 위탁병원의 적정진료를 위해 위탁병원관리단을 둘 수 있다. <변경 13.7.5>

② 공단의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하에 교육연구원, 보훈원, 요양원, 재활체육센터, 휴양원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12.11.27>

③ 공단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하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신설 12.11.27>

제29조(조직) 공단의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① 의료요원을 포함한 직원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거나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직 원 및 겸직교원

제32조(직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임면한다.

② 제1항의 직원에 관한 임면·복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3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4조(겸직교원의 임명) ① 법시행령 제11조의 겸직교원 및 동시행령 제12조의 사립학교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겸직은 당해 대학의 총·학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명한다.
<변경 11.1.3>

제35조(겸직교원의 보직 등) ① 이사장은 겸직교원을 보훈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보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에는 교수 시간의 면제 또는 감면을 해당대학의 총·학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겸직교원의 보수 등) ①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대학에서 지급한다.

②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공단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할 제수당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변경 11.1.3>
- 제37조(겸직해제 등)** 이사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변경 11.1.3>
1. 제35조제2항에 위반한 때 <변경 11.1.3>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 및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변경 11.1.3>

제 6 장 파견공무원

- 제38조(파견공무원의 요청)** 이사장은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소속 공무원의 공단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23.7.10.>
- 제39조(파견공무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급에 상응한 공단의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③ 파견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파견공무원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파견근무의 해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변경 11.1.3, 23.7.10>
- 제40조(파견공무원의 보수)** 파견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제 7 장 사 업

- 제41조(사업의 범위)** ① 공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연구 <변경 15.7.8>
 2. 보철구의 제작·공급·수리 및 연구개발
 3. 임상연구
 4. 정양시설의 설치운영
 5. 전상군경 등의 상이구분·재심 및 재분류에 관한 신체검사(수탁사무)

6. 재활의료와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7. 전공의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8. 직업재활교육시설의 설치운영
 9.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 및 시설관리·운영
 10.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변경 11.1.3>
 11.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11.1.3, 15.7.8>
 12.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신설 15.7.8>
 1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
 14. 국가유공자등 그 자녀의 학비지원
 1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16.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17.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18. 국가유공자등 복지에 관한 업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변경 23.7.10.>
 19. 제1호 내지 제17호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변경 11.1.3>
-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제조·판매·수리·가공 및 서비스업
 2. 도급업 및 부대사업
 3.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사업
 4. 보훈병원의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반환자진료
(보철구제작을 포함한다)사업
 5. 보훈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택지조성, 개발, 취득, 처분 및 주택, 건축물의 건축, 분양, 임대사업 등
 7. 광고물 제작 및 광고업
 8.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9. 장례업 및 부대사업

10. 교육훈련 및 교육시설 관리·운영

11. 주차장 운영사업 <변경 12.3.7>

③ 공단은 보훈기금 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변경 11.1.3, 23.7.10>

④ 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출자·기술제휴 및 위탁경영 등을 할 수 있다.

제42조(예산의 편성) ① 이사장은 제44조에 따른 경영목표와 공공법 제50조(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1.1.3>

② 제1항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11.1.3, 23.7.10>

③ 제1항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포괄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자금계획서 등을 포함하되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12.12.26>

④ 이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변경 11.1.3>

⑤ 공단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10.3.31, 11.1.3, 2026. 2. 11.>

제43조(예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제4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11.1.3>

② 공단은 제42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 11.1.3>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1.1.3, 23.7.10>

제44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이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및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0.3.31, 11.1.3, 23.7.10, 2026. 2. 11.>

②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1.1.3, 23.7.10, 2026. 2. 11.>

제45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 공단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변경 10.3.31, 11.1.3, 23.7.10, 2026. 2. 11.>

②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동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11.1.3>

제 8 장 재 산 과 회 계

제46조(기본재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국가로부터 귀속된 토지·건물·기기·설비·현금 및 유가증권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것
2. 외국기관 또는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건물·기기·설비·현금 및 유가증권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것 <변경 11.1.3>
3. <삭제 19.12.31>
4. 기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지정된 재산

제47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① 공단이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변경 23.7.10>

1. 토지·건물

2.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11.1.3. 23.7.10>

제4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공단은 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그 대상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국유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9조(사업연도 및 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의 회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하되 예산 및 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변경 17.9.28>

제50조(운영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2. 사업수익금

3. 기부금

4. 차입금

5. 전년도 이월금

6. 기타 수입금

제51조(보상금의 요구)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재료비·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9.12.31, 23.7.10>

1. 사업계획서

2. 추정포괄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변경 13.7.5>

3. 기타 보상금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52조(보상금의 지급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7.9.28. 23.7.10>

제53조(보상금의 관리) 공단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23.7.10.>

제54조(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11.1.3, 19.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19.12.3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신설 19.12.31>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신설 19.12.31>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신설 19.12.31>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1.1.3, 19.12.31>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11.1.3>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번호 <변경 19.12.31>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 조제연월일 <변경 19.12.31>

5. 약제비용 총액, 공단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액 및 본인부담액 <변경 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19.12.31>

제55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1.1.3, 17.9.28>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신설 17.9.28>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
<신설 17.9.28>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변경 10.3.31, 23.7.10>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변경 17.9.28>

2. 감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공단은 결산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10.3.31, 23.7.10, 2026. 2. 11.>

제56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보훈병원등의 자본적 투자

2. 다음 연도의 사업을 위한 유보액

3. 보훈기금으로의 진출

제5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변경 11.1.3, 19.12.31>

1. 제54조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 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변경 11.1.3, 19.12.31>
2.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신설 19.12.31>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변경 11.1.3, 19.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같은 법 제73조 및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11.1.3, 19.12.3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 <변경 11.1.3, 19.12.31>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변경 11.1.3, 19.12.31>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 11.1.3>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변경 11.1.3, 19.12.31>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변경 11.1.3, 19.12.31>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신설 19.12.3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설 19.12.31>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변경 11.1.3, 19.12.31>

④ 제1항에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변경 23.7.10.>

제 9 장 보 칙

제58조(경영공시 및 고객현장)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 예산 및 운용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5.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6. 경영실적 평가결과
7.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감사의 감사보고서
9.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내지 제34조의2(권고 등)에 따라 변상책임판정, 징계·시정·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
1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신설 21.12.27>
11. 그 밖에 공단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 21.12.27>

② 공단이 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경영공시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게시·비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비치 <변경 11.1.3>
3. 제1항 제1호 및 제3호내지 제10호에 따른 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비치 <변경 11.1.3>

③ 공단은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의 기준, 절차와 방법 및 시정조치 등의 고객현장을 공포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9조(정관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3.7.10.>

제60조(해산) ① 공단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6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사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및 공단운영의 기본준칙이 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23.7.10.>

1. 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임·직원과 겸직교원 및 파견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제63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 등) ①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말까지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권리·업무의 승계) ① 공단은 다음 각호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공단설립당시 신축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는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이 그 권리와 업무를 포괄승계한다.

1. 국립원호병원
2. 국립직업재활원(직업재활회전기금을 포함한다.)

3. 원호단체후원회

4. 재단법인 원호장학회

5. 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자산 및 부채

제4조(조합의 감독) 사장은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설립위원의 서명) 공단의 설립위원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한다.

1981년 11월 2일

설 립 위 원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4-5

성 명 : 최 병 삼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1-1

성 명 : 이 강 천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성APT B동 606호

성 명 : 조 후 균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55-31

성 명 : 민 칠 식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7-45

성 명 : 정 호 용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감사는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공공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

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0. 3.31>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제4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장기경영목표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증장기 경영목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규정의 정비) 보훈요양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관 제41조제1항제17호”를 “정관 제41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 칙 <2012. 3.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주차장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변경 전에 시행된 주차장 운영사업은 개정된 정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결손처분”을 “결손금의 처리”로 한다.

부 칙 <2012. 6.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속 과장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로 한다.

부 칙 <제339호, 2012. 11.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6
제347호, 회계규정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추정손익계산서”를 “추정포괄손익계산서”로,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357호, 2013. 7. 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374호, 2014. 1. 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402호, 2015.7.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446호, 2017.9.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기회는 2월, 10월, 12월에 개최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464호, 2018.6.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로 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504호, 2019.12.3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541호, 2021.12.2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569호, 2023.7.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을 첨부 1과 같이 한다.

③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 제안제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⑤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⑦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⑧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⑨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⑩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⑪ 연봉제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⑫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38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4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4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5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 중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⑭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⑮ 보훈병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⑯ 위탁병원 진료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⑰ 보훈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46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 2와 같이 한다.

⑱ 보훈복지타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 3과 같이 한다.

⑲ 보훈휴양원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⑳ 보훈요양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4를 첨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 5와 같이 한다.

㉑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㉒ 보훈재활체육센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㉓ 직제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첨부 6과 같이 한다.

㉔ 위임전결사항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첨부 7과 같이 한다.

㉕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②⑥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②⑦ 직무평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호서식을 첨부 8과 같이 한다.
- ②⑧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첨부 9와 같이 한다.
- ②⑨ 회계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첨부 10과 같이 한다.
- ③⑩ 보훈휴양원관리운영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③⑪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 11과 같이 한다.
- ③⑫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③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③⑭ 성과급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③⑤ 보안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4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7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75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7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87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③⑥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을 첨부 12와 같이 한다.
- ③⑦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제5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제57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③⑧ 보훈복지사업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 ③⑨ 중앙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4호 중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④⑩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을 첨부 13과 같이 한다.
- ④⑪ 위탁병원진료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 ④⑫ 보훈교육연구원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중 “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1을 첨부 14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번호 제627호, 2026. 2. 1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④ 연봉제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계약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제6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43조제1항제5호,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4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50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5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56조제20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5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6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65조제1항제6호, 제1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8조제1항, 제5항,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75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75조의2제1항,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75조의2제4항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7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9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9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95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9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8조제8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4조제5항제1호나목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4조제7항, 제13항, 제14항, 제17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정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세칙, 지침을 포함한다.)에서 “기획재정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승계한 “기획예산처” 또는 “재정경제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